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08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11. 13.
- 라. 회부일자 : 2024. 11. 13.

2. 제안이유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 체계적·효율적·전문적 지원을 위해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공공기관에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행 추진 근거

- 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3항
- 2)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3조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나. 위탁·대행 추진 필요성

- 1) 전문적인 지식과 인프라를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2) 공공기관의 전문성 및 시스템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 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 선정에 있어 공정성 확보
- 3)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전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관내 중소기업(수혜기업)에 수요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4) 디자인 전문기업(수행기업)-수혜기업 매칭을 통해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 및 개발 디자인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디자인 전문기업의 동반성장 제고

다. 위탁·대행 사무 주요 내용

- 1) 대상 사업 : 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 2) 위탁 기간 : 협약일 ~ 2025년 12월 31일
- 3) 위탁 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¹⁾
 - 위탁 시설 :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 위탁 시설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퍼블릭가산 C동 5층



- 1)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1970년 창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 031-780-2114)

- 지원 시설 및 규모 : CMF쇼룸(약150m²), 스마트스튜디오(약50m²), 컨퍼런스룸(약72m²), 디자인미팅룸(약20m²)

4) 대행 사업 내용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모델(Design 7 UP Innovation)」



- 전문가 컨설팅 진단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디자인 개선 전략 도출
- 우수 컨설팅 수혜기업을 선정하여 디자인 전문기업과의 매칭 및 개발 지원
- 우수 수요맞춤 디자인 개발 수혜기업을 선정하여 제조지원 컨설팅 및 홍보 지원
- 2025년부터 UX·UI 디자인, 영상디자인 등 비제조 분야 지원 확대

5) 소요 예산 : 250백만원(구비)

4.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 제3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8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참고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센터는 디자인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이 디자인을 통해 신상품 기획력과 개발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국 산업단지 내 7개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제조 디자인 융합 제품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우리구 위탁·대행 세부내용을 보면 2025년부터는 UX·UI 디자인, 영상디자인 등 비제조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우리구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역량진단 컨설팅, 수요맞춤 디자인 개발, 제조·양산 컨설팅, 홍보 마케팅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한국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1. 7.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49호, 2022. 8. 15., 일부개정]

제6조(마케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소요되는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할 경우 관내 우수 기업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소상공인)를 위한 교육비
2.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 경비
3.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및 국내·외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경비
4.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01호, 2023. 10. 12., 제정]

제4조(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위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그 밖에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관부서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